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1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종길,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이상욱,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황철규 의원(14  
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벽보, 현수막,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그러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존의 제28조 조문 제목인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변경함
- 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
- 다.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을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불법 유동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불법광고물 정비”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을 “시장·구청장은”으로, “불법광고물”을 “불법 유동광고물”로, “수”를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로 한다.

- ① “유동광고물”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불법 <u>유동광고물</u> 방지 및 제거 등) &lt;신 설&gt;</p> <p>①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u>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u>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u>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28조(불법 <u>유동광고물의 관리</u>)</p> <p>① “<u>유동광고물</u>”이란 영 제3조 <u>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u></p> <p>② ----- ----- ---- <u>불법 유동광고물</u> ----- ----- -----.</p> <p>③ ----- ----- <u>불법 유동광고물 정비</u>----- ----- <u>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u>-----.</p> <p>④ <u>시장·구청장은</u>----- ----- ----- <u>불법 유동광고물</u>----- ----- <u>수</u> <u>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u> ----.</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문서번호

2023101300000034

## 미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허훈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10.13.

회신일 : 2023.10.16.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침부 근거 규정
3. 미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제4항 중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5조(실태조사) 해당)

1) 추계결과 = 74,250천원(연평균 14,8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4,8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전제
-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조사 비용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
- 실태조사 비용은 2023년 서울시 예산서 홍보기획관 실태조사비 준용
- 물가상승률 미만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74,250천원(연평균 14,85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 (안 제28조)	14,850	14,850	14,850	14,850	14,850	14,850	74,250
	소계(b)	14,850	14,850	14,850	14,850	14,850	14,850	74,250
□ 총 비용(b-a)		14,850	14,850	14,850	14,850	14,850	14,850	74,250

주: 실태조사 비용은 2023년 서울시 예산서 홍보기획관 실태조사비 준용

○ 실태조사 비용 ≙ 74,250천원  
= 14,850천원 × 5년

※ 2023년 서울시 홍보기획관 실태조사비 14,850천원 준용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